



제 2 주제

손해배상조정의 활성화가 언론소송에 미치는 영향

박종순 변호사

손해배상조정의 활성화가 언론소송에 미치는 영향

박 종 순
변호사,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I. 서 론

언론중재위원회가 손해배상에 관한 조정을 활성화하면 장차 언론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법원의 사건 감소와 업무부담의 경감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분쟁에 관하여 대체적 분쟁해결 기관(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분쟁에 관한 법적 해결은 국가, 즉 법원에 의한 판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더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법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또 복잡한 분쟁을 법원이 모두 떠맡아서 처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었다. 그래서 법원에 의한 사법적 분쟁해결수단이 아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이다. 지난 30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분쟁에 관한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

제를 제공하였다. 확실히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는 소송에 비해 시간이 훨씬 덜 들고 비용 또한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준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손해배상에 관한 조정·중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이 활성화되려면 먼저 손해배상의 인정과 손해배상액의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구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손해배상사건의 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에 대하여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예컨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성립 비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손해배상 조정액도 법원의 인용액과 비교하여 볼 때 턱없이 낮았다. 짧은 기간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현상은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조정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런 이유로 지금 당장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에 관한 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중재 제도가 도입된 경위를 보고 이어 최근 위원회에서 처리한 손해배상사건의 조정 결과를 통해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그 문제점이 발생된 원인을 살펴본 다음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손해배상사건 조정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사건의 조정과 관련한 몇 가지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글을 마치고자 한다.

II. 손해배상사건 조정제도의 도입 과정

1. 언론중재법의 제정 경위

먼저 언론중재법에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중재제도가 도입하게 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70호로 언론중재법이 제정되어 2005년 7월 28일부터 위원회에 의한 언론중재 등이 시행되었다. 물론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방송법¹⁾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²⁾에 언론중재위원회 및 언론중재제도 규정이 있었다.

언론중재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81년 언론기본법에 의해서다. 이 법에는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이 있었다.³⁾ 그러나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무렵 이 제도를 이해하는 국민이 많지 않았고, 또 이 제도의 근거 법률인 언론기본법이 언론통제법이라는 좋지 않은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국민들 사이에는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중재제도를 통해 언론에 관한 분쟁이 신속하게 종결되고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자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19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었고, 다만 방송법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각기 언론중재제도를 계속 존치시켰다. 그 후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단일법 제정의 요구가 높아지자 2005년 드디어 지금의 언론중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언론중재법은 피해구제방법으로서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중재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2. 언론중재법 상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중재 도입에 관한 논의

언론중재법을 제정할 당시 손해배상사건을 조정·중재제도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었다. 찬성 의견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1)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에는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규정을 두고 있었다.
2)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987. 11. 28. 법률 제3979호)에는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규정을 두고 있었다.
3) 구병삭 (1983). 『증보 헌법학 I』. 서울 : 박영사, 542쪽.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손해배상사건의 조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즉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사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로는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가 있는데 이 중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 이외에 손해배상청구까지 조정 대상으로 포함시켜야만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완벽하게 달성될 수 있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부여된 고유의 권리로서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이미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일반화되었으므로 이를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의 논거는 언론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짧은 조정 기간 내에 이런 문제를 검토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었다. 예컨대 언론보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문제, 과실상계 문제,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 등은 위원회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것이었다.⁵⁾

어쨌든 이러한 찬성과 반대의 논의를 거쳐 손해배상사건에 관한 조정·중재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에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는 후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언론중재법 제24조에 손해배상에 관한 중재 신청 규정을 두고 있다.

4) 양경승 (2004).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언론중재』, 2004년 가을호, 14~15쪽; 김서중 (2005). 중재절차의 변화에 따른 법적 고찰. 『언론중재』, 2005년 여름호, 21쪽.
5) 김창숙 (2011). 전문가들이 바라본 언론조정·중재제도 30년. 『언론중재』, 2011년 봄호, 36쪽; 양삼승 (2007). 『언론관계 소송의 제문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 및 인격권 침해의 구제 수단 및 절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131쪽; 한위수 (2006).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언론중재』, 2006년 겨울호, 8쪽; 한편 손해배상사건 조정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으로서, 이 제도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이 조정단계에서 일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위원회는 배상액에 관하여 강제조정을 행하거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중재결정을 내리는 권한도 갖게 되므로 그것은 법관에 준하는 자격과 독립성을 위한 신분보장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데 언론중재법에는 그러한 요건 규정이 없고, 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으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배상액을 결정할 때 법원의 판결에 의한 산정기준을 벗어난다면 위원회의 존재 의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한다. 박용성 (2007년). 『언론관계 소송의 제문제: 신문관계법의 주요 쟁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256쪽.

Ⅲ.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에 관한 처리 현황

앞에서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제도가 도입된 경위를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지난 3년간 손해배상사건의 조정 현황 및 처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⁶⁾

1. 신청 현황

2010년에 접수된 손해배상 조정사건은 773건으로서 2009년보다 74건이 증가하였다.

<표 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건수 및 비율

연도 \ 구분	전체 조정사건	손해배상사건	비율(%)
2008	954	324	34.0
2009	1,573	699	44.4
2010	2,205	773	35.1

2. 처리 결과

2010년에는 조정성립 28.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5.4%, 조정불성립 결정 7.2%, 기각 4.9%, 취하 54.2%이다. 취하율이 54.2%로 높은 것은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와 함께 병합 청구된 경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로 합의되면 손해배상청구는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성립률은 2009년에 비해 3.5% 높아진 28.2%이고,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피해구제율은 2009년에 비해 13% 높은 80.0%이다.

6) 이하 내용과 표는 『2010년 연간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37쪽 이하에서 인용하였다.

<표 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 처리 결과

구분 연도	사건수	처리 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8	324 (100)	115 (35.5)	11 (3.4)	7 (2.2)	51[2] (15.7)	4 (1.2)	2 (0.6)	134[101] (41.4)	72.0
2009	699 (100)	172 (24.7)	16 (2.1)	13 (1.7)	33 (4.7)	232 (33.2)	6 (0.9)	227[121] (32.3)	67.0
2010	773 (100)	218 (28.2)	24 (3.1)	18[1] (2.3)	56[1] (7.2)	38 (4.9)		419[344] (54.2)	80.0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 ()안의 숫자는 %

* 피해구제율 = 피해구제건수/조정건수

3. 청구액 및 조정액

2010년 손해배상 청구액은 평균 6,600만 원으로 다른 해에 비해 낮아졌다. 조정액은 최저 15만 원에서 최고 1,5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조정액 평균은 183만 원, 중앙액은 100만 원으로 평균액과 중앙액 모두 작년보다 50% 정도 낮아졌다. 최빈액은 100만 원(10회)이었고, 이어 50만 원(4회), 200만 원 및 15만 원(각 3회) 등이었다.

<표 3>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	평균액	중앙액	최저액	최고액
2008	185,920,574	20,000,000	110,000	10,000,000,000
2009	221,393,861	20,000,000	100	50,000,000,000
2010	65,993,749	20,000,000	100	10,000,000,000

* 중앙액이란 사례를 순서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두 개 값의 평균액을 말한다.

7)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값을 말한다.

<표 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단위 : 원)

연도 \ 구분	평균액	중앙액	최저액	최고액
2008	3,331,250	2,750,000	300,000	10,000,000
2009	3,594,103	2,000,000	120,000	30,000,000
2010	1,832,759	1,000,000	150,000	15,000,000

IV. 2010년 법원 판결의 인용액과 위원회 조정액의 비교⁸⁾

1. 법원 판결의 현황

가. 2010년 1년간 손해배상청구사건 123건 중 원고가 승소(일부 승소 포함)한 사건은 33건으로 원고승소율은 26.8%이었다. 청구액 평균액은 4억 2,133만 원, 중앙액은 5,000만 원, 최빈액은 3,000만 원, 최저액은 250만 원이었다. 1억 원 이상인 억대의 청구가 전체 손해배상청구 123건 중 58건(47.2%)을 차지하였고, 최고 청구액은 200억 원이었다.

나. 한편,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33건에 대해 인용액을 살펴보면, 평균액은 2,424만 원, 중앙액은 1,000만 원으로 평균액이 중앙액의 2.4배 정도였다.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손해배상액인 최빈액은 1,000만원이었다. 위자료 인용 최고액은 1억 원이었다.⁹⁾

다. 인용액의 분포를 보면 5백만 원 이하가 3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백만 원을 초과하되 1천만 원 이내인 경우가 24.2%이었다.

8)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0년』, 언론중재위원회, 40쪽 이하에서 인용하였다.

9) 약간 오래된 자료이지만 2000년 한해 언론사건의 평균 인용금액은 3,800만 원(평균 청구금액이 2억 9,000만 원이므로 청구금액 대비 13% 정도 수준임)정도이고, 공인이 제기한 언론사건의 평균 인용금액은 3,500만 원(평균 청구금액이 4억 6,500만원임)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법원이 인용한 제일 큰 금액은 1억 원이라고 한다. 함석천 (2005). 손해배상청구권의 도입과 언론중재. 『언론중재』, 2005년 봄호에서 인용하였다.

2. 위원회의 조정액과 법원의 인용액 비교

2010년도 위원회의 조정액과 법원의 인용액을 비교한 바, 위원회 조정액의 평균액은 법원에 비해 약 1/13 수준이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두 기관의 비교가 보다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같은 청구사건에 대해 판단한 두 기관의 손해배상액 차이를 분석해야 하나, 이번 분석은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청구사건을 각자 심리하여 판단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조정액과 법원의 인용액을 일률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표 5>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단위 : 원)

구분	빈도(건)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조정액	30	1,832,759	1,000,000	1,000,000	150,000	15,000,000
인용액	33	24,242,424	10,000,000	10,000,000	1,000,000	100,000,000

* 조정액 빈도 30은 2010년에 손해배상지급 결정된 건수를 말함

* 2010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중재가 2건에 불과하여, 액수 비교표에 반영하지 않음

참고로 2008년의 경우 위원회의 평균 조정액은 333만 원, 법원의 평균 인용액은 2,340만 원(약 1/7)이었고, 2009년의 경우 위원회의 평균 조정액은 359만 원, 법원의 평균 인용액은 2,348만 원(약 1/6.5)이었다.¹⁰⁾

3. 동일 사건에서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판결 인용액의 비교

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위원회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되어 법원에 자동으로 소 제기된 사건을¹¹⁾ 기준으로 위원회의 조정액과 법원

10) 『위원회와 법원의 손해배상 비교분석 보고』, 언론중재위원회 연구본부 교육팀(2011.7. 미발간 자료임)에서 인용하였다.

11) 언론중재법 제22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위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 인용액을 비교한 바, 10건 중 5건의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원이 위원회가 내린 결정액을 존중하고 이를 판결에 적극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자동 소 제기된 사건은 소송에서 조정, 화해, 취하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판결로 선고된 사안은 많지 않았다.¹²⁾ 나. 일부 사건에서는 법원 인용액이 위원회의 조정액보다 오히려 적은 사례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위원회와 다른 경우이거나 언론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한 경우 등이었다.

V. 통계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 원인

1. 문제점

손해배상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위원회의 조정·중재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3년간 통계에 의하면 비록 동일한 사건을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의 조정액이 법원의 인용액보다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또 2010년 위원회의 최고액이나 평균액, 중앙액 모두 같은 기간의 법원의 판결보다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보면 위원회의 조정액 중 평균액과 중앙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더욱이 위원회의 조정액은 신청인의 청구액과 비교해볼 때 너무 낮다.

한편 피해구제율은 2010년의 경우 80%이지만 조정 성립율이 28.2%이고 취하율이 54.2%이므로 높은 피해구제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

12) ① 2008년도의 경우 6건을 비교하였다. 그 중 2건(100만 원 1건, 1,000만 원 1건)은 위원회의 조정액과 법원의 인용액이 동일하였고, 3건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액 700만 원이 법원의 인용액 600만 원으로, 위원회의 1,000만 원이 법원의 300만 원으로, 위원회의 1,500만 원이 법원의 1,000만 원으로 각 감소하였고, 1건(위원회 결정액 100만 원)은 기각되었다. ② 2009년도의 경우 1건(500만 원)이었는데 위원회와 법원의 금액이 동일하였다. ③ 2010년도의 경우 2건(각 100만 원, 1,000만 원)이 위원회와 법원의 금액이 동일하였고, 1건(300만 원)은 기각되었다.

다. 즉 2010년 위원회에서 실제로 손해배상지급 결정을 한 건수는 32건으로 4.1% (773건 중 32건)에 불과하였다. 이는 2008년의 12.7%(324건 중 41건), 2009년의 7.2%(699건 중 50건)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이에 반하여 법원의 경우 2010년도에 인용한 건수는 전체 건수 123건 중 33건으로 26.8%였고 2008년에는 52.1%(96건 중 50건)였으며 2009년에는 47%(115건 중 54건)였다.¹³⁾

2. 조정액이 낮은 원인

그렇다면 위원회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율이 낮은 원인 그리고 위원회의 조정액이 법원의 인용액보다 낮은 원인은 각각 어디에 있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언론중재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이고 손해배상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생각, 손해배상은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주저하고 설령 손해배상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엄격한 증거에 의한 배상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둘째,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손해배상은 거의 대부분 위자료이다. 그래서 조정에서의 주된 쟁점도 위자료 산정이다. 그런데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는 달리 산정 기준이 없다. 통상 피해자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¹⁴⁾ 그러다 보니 조정 과정에서 신청인의 양보를 통해 위자료를 낮게 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위자료를 낮게 정함으로써 언론사의 동의를 쉽게 받으려는 생각도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조정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직권조정결정의 경우 21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는 생각, 조정·중재는 소송과는 달리 신속한 구제에 그 취지

13) 앞의 『위원회와 법원의 손해배상 비교분석 보고』에서 인용하였다.

14) 곽윤직 (2005). 『제6관 채권각론』. 박영사, 466쪽; 한편, 언론중재법 제30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재산상 손해 또는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있다는 생각 등으로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기보다는 신속한 합의를 하기 위한 조정액으로 진행하여 조정액이 낮아지게 된다.

넷째,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때까지의 증거 등 제반 사정으로는 손해배상의 성립을 인정하기가 애매하지만 손해배상을 기각하면 신청인에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때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고자 하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대폭 낮추고 피신청인과의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언론사는 조정과정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는 대체로 수용하려는 자세이지만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언론사의 이미지, 책임 소재 등의 문제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한편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대체로 만족하고 설령 조정액이 삭감되더라도 대부분 수용하기 때문에 조정액이 낮아지게 된다.

여섯째, 중재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중재위원 대부분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기준이나 산정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다. 그런 상황에서 예컨대 신청인이 정정보도청구가 받아들여져 손해배상에 대하여 크게 집착하지 않고, 피신청인도 손해배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 취하 또는 낮은 금액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VI. 손해배상 조정의 활성화 방안

앞에서 각종 통계와 문제점을 통해 손해배상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율이 매우 낮고, 또 위원회의 조정액이 법원의 인용액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하여도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다. 그러면 위원회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 아래에서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

1. 실질적인 손해배상 조정 비율 제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원회에서 손해배상을 받은 비율은 2010년도

에는 4.1%, 그리고 2008년에는 12.7%, 2009년도에는 7.2%로서 실질적인 피해구제율이 매우 낮다. 특히 2011년 6. 30. 현재 위 비율은 2.9%(417건 중 12건)로서 매우 낮다.¹⁵⁾ 다만 통계상 피해구제율이 높은 것은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조정을 할 때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게 하거나 취하하게 하는데 이 경우를 피해구제율에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치상의 피해구제율을 높이는 것을 지양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가능한 병합된 정정보도청구 등 다른 청구의 인용을 고려하지 말고 손해배상청구만 놓고 손해배상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철저한 증거조사

증거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⁶⁾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만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에는 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직권조정결정시에는 21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충분한 증거조사가 어렵다. 위 기간을 훈시규정으로 보고 정확한 증거조사를 위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언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 또 위 기간을 연장하여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 인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반면에 사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언론중재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역시 문제다.

따라서 가능한 위 기간 중에 증거조사¹⁷⁾를 하여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사건이 접수되면 제1회 심리기일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출하도록 권유해 볼 만하다. 신청인에게는 보충 자료나 증거의 제출을, 피신청인에게는

15) 앞의 『위원회와 법원의 손해배상 비교분석 보고』에서 인용하였다.

16) 장현우 (2011).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및 관련 사례 검토』, 2011년도 중재위원연수 자료, 32쪽.

17) 언론중재법 제20조에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언론조정중재규칙에는 제17조에 서증조사, 검증 등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에 275회에 걸쳐 증거조사를 하였는데 그 중 손해배상 산정과 관련한 것이 108건이었다 [언론조정 실무가이드, 언론중재위원회 (2009), 155쪽에서 인용하였다].

답변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신속한 심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쟁점이 많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회 이상 심리를 진행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3. 적극적인 직권조정결정

지금까지는 직권조정결정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직권조정결정이 강제성을 띠고 있어 위원회의 기능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 즉 위원회의 사건은 가능하면 당사자의 양보와 타협에 의한 합의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굳이 강제로 직권조정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에서 벗어나 당사자들에게 위원회의 사건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여 주어 합의를 유도하고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사한 내용에 맞게 과감히 조정금액을 정하여 직권조정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직권조정결정을 할 때 손해배상액을 낮게 결정하는 사례도 있다. 그 이유는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법원으로 기록이 송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적 부담, 즉 법원에서 기각된다거나 아니면 조정액이 삭감된다는 부담(위원회와 제1심 법원은 별개의 기관이지만 마치 위원회가 제1심 법원의 하급심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임)으로 인해 대체로 신청인의 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조정 금액을 결정한다.

또 신청인이 소송의지가 약하고 언론사가 소액의 손해배상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매우 낮은 금액으로 조정 금액을 결정하기도 한다. 신청인이 소송의지가 약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심적 부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과감하게 조정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손해배상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

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

한 언론에 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 언론언론중재법 제 4조 제2항은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사는 언제든지 잘못된 보도를 통하여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사는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용기 있는 자세로 침해사실을 인정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¹⁸⁾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 경우 언론인 출신 중재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언론사는 언론인 출신 중재위원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 출신 중재위원은 조정 과정에서 언론사를 설득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¹⁹⁾

5. 신청인의 요구와 법원의 인용액을 반영한 조정액 산정

2010년 위원회의 조정액 중 최저액은 15만 원인데 비해 법원의 인용액 중 최저액은 100만 원으로서 조정액이 인용액보다 매우 낮다. 또 지난 3년간 위원회의 조정액 중 최저액을 보면 1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체로 낮다. 이처럼 조정액의 최저액을 낮게 정하면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해 줄 수 없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정액을 정할 때 신청인의 청구 금액과 유사 사건에 있어 법원의 인용액을 모두 참고하여 피해자가 수급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8) 여기서 유념하여야 할 점이 있다. 즉 개인의 명예 등이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衡量하여 그 규제와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자칫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언론의 위축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한편 언론중재법도 제1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 장현우, 앞의 논문, 35쪽.

VII.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1. 언론의 피해 범위와 관련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라 함은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손해”를 말한다.²⁰⁾ 이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²¹⁾ 이 주장에 의하면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 저작권 등 그 성질상 보도의 진실성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는 조정 대상이 아니고 나아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의 침해도 그것이 진실한 보도에 의한 것이라면 위원회가 조정할 수 없으며, 설령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²²⁾

그러나 언론중재법에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 신청의 규정을 둔 취지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겠다는 것이므로 그 피해의 범위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²³⁾ 또한 언론중재법 제5조에 의하면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언론중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의 조정 신청은 위 구제 중에 하나이

20) 윤 경 (2005).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언론중재』, 2005년 여름호, 37쪽.

21) 한위수, 앞의 논문, 16쪽; 장호순 (2008). 위원회 조정 사례 및 법원 판결을 통해 본 보도의 문제점과 피해 구제. 『언론중재』, 2008년 봄호, 16쪽.

22) 한위수, 앞의 논문, 17쪽.

23) 언론중재위원회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조정 신청한 경우는 물론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조정 신청의 경우에도 조정을 하고 있다. 김동하 (2007).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언론중재』, 2007년 가을호, 8쪽 이하 참조.

므로 손해배상의 조정 신청 대상에 인격권 침해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전자(前者)의 견해에 찬성한다. 실무도 전자에 따르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견해의 대립은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의 피해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법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개념을 명백히 할 필요는 있다.

2.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

언론보도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조정 신청을 하여 그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취재기자 등의 고의나 과실로 이루어졌다는 것, 언론보도가 위법하다는 것, 언론보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언론보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²⁴⁾

그런데 입증과 관련하여 언론소송은 다른 소송에는 없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 즉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와 판례와 학설이 위 요건에 추가하여 인정하는 “허위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그것이다.²⁵⁾ 예컨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한 경우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또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언론 등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위법성이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언론사에 있다.²⁶⁾ 손해배상 조

24) 『언론법연구』, 사법연수원 출판부(2011년), 41쪽; 이광범 외 (2002). 『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 나남, 199쪽.

25)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28365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박윤직, 앞의 책, 401쪽; 윤 경, 앞의 논문, 38쪽; 『언론법연구』, 45쪽; 이광범 외, 앞의 책, 199쪽; 이은영 (2007). 『제5판 채권각론』. 박영사. 977쪽, 980쪽; 그런데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에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판례의 입장을 실정법에 도입하였다.

26) 윤 경, 앞의 논문, 39쪽; 이광범 외, 앞의 책, 200쪽.

정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위법성조각사유이므로 조정 절차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

3. 조정 기간의 연장과 관련

언론중재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1항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 조정 신청 사건의 경우 위 조정기간이 짧아 문제다.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려면 인과관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법률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위 조정기간 안에 절차를 모두 마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기간 연장에 대한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위 조정기간을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법에는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또는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훈시규정이라는 주장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

VIII. 결 론

예로부터 “소송은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든다”, “나쁜 화해도 좋은 판결보다 낫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라는 말이 있듯이 “일도양단(一刀兩斷)”인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대화와 양보 그리고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대법원도 지난 2009년 서울 등지에 상설조정센터를 설치하여 조정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언론분쟁에 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는 앞으로 각광받는 대체적 분쟁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손해배상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정을 하면 국민들은

소송이 아닌 조정·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손해배상에 관한 조정이 활성화되면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에 대한 답변은 이렇다. 즉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만족을 주고 또 그들에게 분쟁에서 해방시켜 주는 역할을 함은 물론 법원에게는 사건 감소와 업무부담의 경감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제2주제 지정토론 및 답변

■ 신경민 (MBC 논설위원)

사회부에서 일할 당시 후배기자들이 쓴 기사와 관련해 회사를 대표해 중재위원회에 피신청인 자격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임무는 취재와 보도에서 법률적으로 '상당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 설명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초상권 사안에서는 대부분 지고, 명예훼손의 사안에서는 진실성, 상당성을 다투면 저희가 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80년대 이후 10년씩 나누어 보면 언론중재와 소송 면에서 비약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질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지요. 그만큼 언론사가 내부적으로 단속하는 것이고, 실무에서는 결국 '위축효과'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보도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좋아지는 방향인지, 나빠지는 방향인지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제문의 지적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0년 123건 중 원고 승소한 33건을 가지고 위원회의 조정액과 판결 인용액을 분석한 대목에서는 질적 분석이 절대로 필요해 보입니다. 박 변호사께서도 원고와 발표에서 이미 한계로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 통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십니다. 33건을 가지고 액수와 승소율을 단순 비교하는 접근은 전혀 의미가 없는 시도는 아니지만, 질적인 분석이 따라줘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성격을 지닌 신청사건들이 이 숫자에 들어가 있어 이런 양적 분석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중재의 시일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무적으로 신청인들이 신청한 뒤 언론사에 기일을 지정해 오는 자료를 받았을 시점에 저희들은 자료를 분석할 시간여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혹시 사안이 간단할 경우 본인이나 회사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거의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중재위의 설립 목적대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정해진 기일 안에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문서를 검토하고 준비할 시간 자체가 안 된다는 현실은 큰 문제라고 여깁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속'이라는 필요를 달성하기 위해서 언론사인 피신청인 쪽에 지나친 희생을 강요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중재위원회에 나오는 언론사의 대리인들, 곧 직속상관들이 출석을 통해 느끼는 점은 중재위원들이 이 사안들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회의를 느낄 때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중재위원들도 한 건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건을 다루고 있고 시일도 촉박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언론사가 걸려있는 사건에서 언론사 대리인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왔는데, 중재위원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임하느냐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제1세션에서 '신청인들이 법을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요즘 많은 신청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 등에 정보가 있어 신청인들이 해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청인 중에서 언론에 대해 악의를 갖고 '언론사 이놈들, 한번 골탕먹여보겠다'거나 '이 기회에 골탕도 먹고 돈도 한번 챙겨보겠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 악의적인 신청인들이 꽤 있어서 '이런 것까지 인정하는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중재위원들이 피신청인들을 보호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정하다 싶은 정도로 언론사에게 '돈을 좀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느낌을 주면서 절차를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션이나 이번 세션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청인은 피해를 받은 선한 사람이고 피신청인은 가해를 한 나쁜 놈이라는 도식이 현실에서는 항상 맞진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못했다면 손해배상이든 피해구제보도문이든 다 해야지요. 그러나 위축효과를 주거나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1원이라도 내서는 안되는 것이 논리적이고 법률적입니다. 이건 공적인 일이므로 언론의 자유라는 원칙이 제1의 잣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증거조사나 심리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상

당히 필요하고 팩트에 대한 조사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유능한, 많은 스태프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재위로부터 그런 인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재가 전치주의가 아니고 신청인들이 다음 단계인 소송에서 다뤄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재위원회가 관대한 자세를 취하건 엄격한 자세를 취하건 간에 문제는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재위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에게 비난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중재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서 법원도 인용할 수밖에 없는 논리성, 합리성을 갖추고 모든 당사자로부터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시간도 줄이고 훨씬 경제적이다'라는 정도의 업적이 쌓여야 되겠지요. 그런 점에서도 선한 신청인과 악한 언론사의 구도는 좋지 않습니다. 언론사에게도, 중재위원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윈윈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합리와 논리라는 명성(reputation)'을 쌓아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 매체가 다양해진 현재에도 동일효과발생원칙을 고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의 경우에는 유감스럽게도 동일효과발생원칙을 적용할 경우 방송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되는 불행한 사태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을 내리면서 더 구체적으로 각 매체의 사정을 감안하고 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인 신청인 중에는 개인과 기업이 있고, 기업 중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다양합니다. 또 노무현 정권 이후 새로운 현상으로서 신청인 중에 관과 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과 공을 상대로 다툼을 한다는 것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고 말하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이런 차이를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이를 더 나누고 구체화해서 심의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 변호사 발표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좋은 대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적을 더 하자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지적은 사전교육을 충분히 해서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하는 점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겠지요.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사전교육,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등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 국차장)

이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여해달라는 말에 왜 저를 토론자로 섭외했을까 생각하다가 인터넷 언론을 대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 언론을 대변해서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언론과 관련해서 선정성이나 비윤리성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언론들도 신문윤리위원회 산하에 인터넷윤리위원회를 최근에 발족했습니다. 저도 1기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언론 종사자 뿐 아니라 학계, 소비자 단체, 법조계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불과하지만, 심의과정에서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인터넷 언론과 관련해서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방송, 신문 등의 기존언론에 비해서 인터넷 언론이 더 선정적이고 더 비윤리적이냐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인터넷 언론도 앞으로 더욱더 언론의 공익성과 관련해서 한사람의 피해자라도 생기지 않도록 배가의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박 변호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조정으로 인해 법원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 가능하여 피해자를 더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면 활성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인정하는 선에서 끝내고 싶지 손해배상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비교해서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등의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중재위의 조정액이 법원의 인용액보다 적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전제, 다시 말해서 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제도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가 조정액이 법원보다 낮기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제문에는 그런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언론중재위 손해배상 비율이 높지 않았다는 데이

터를 제시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동기간 중에 법원에서 언론과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들이 증가했다는 데이터는 있으신지, 있다면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사 입장에서 손해배상까지 가고 싶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언론중재위에서 손해배상이 높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그 요인의 하나로 언론중재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언론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언론중재위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나 데스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글귀, 위치, 양 등에 신청인들의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언론사의 입장을 말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의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언론사 데스크들이 피신청인으로 나와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그것은 보다 더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언론중재위에서 손배소 사건이 활성화된다면 저희들로서는 데스크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대동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법원에 손배소가 제기되면 전적으로 변호사에 위임을 하면 되지만, 언론중재위에서 손배소가 활성화된다면 데스크가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전문적으로 계량화해서 논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변호사를 대동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조정기간이 짧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14일이란 기간 동안 사안에 대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방어논리를 세우고, 증거를 찾고 하는 과정이 매우 짧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은 피해자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방어기제를 발동해서 앞에서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논지에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법원소송까지 가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언론사 입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언론중재위에서의 손해배상조정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또한, 언론사가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지 않고 용기 있는 자세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분에도 동의합니다. 사전에 기사를 더 엄격하게 스크린하고 교육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다양해지는 매체상황 속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고 용기 있는 자세로 침해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언론사가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박종순 (제2주제 발제자, 변호사,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신경민 위원님께서 통계 수치에 대한 질적 분석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역시 질적 분석을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각주 12번>에 위원회를 거쳐 가서 법원에서 판결된 사건을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래도 법원이 상당부분 위원회의 조정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재위원들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과 스태프들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재위원들이 사건에 임하기 전에 사건을 다 파악하고 있고 또 스태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님의 지적은 열심히 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적으로 피신청인은 나쁘고 신청인은 좋다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조정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재부장님이 현직 부장판사님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입장과 피신청인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다음 결정하고, 다른 중재위원님들도 공정한 마음으로 심리를 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나쁘고 신청인은 좋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에서 발표했듯이 언론중재위가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책정해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은 적절치 않고, 조정 시 신청인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언론중재법 1조에도 나와 있듯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책임을 적절히 비교형량해서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종근 국장님께서 법원에 언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한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향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 결정과 관련해서 중재위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발제문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변호사이지만 위자료 산정액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일정한 기준이 없고 각 사건들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중재부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생각해보고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중재위원님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중재부장님이 현직 판사님이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의 인격

권을 침해하고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언론사라고 해서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언론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